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25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채현일

이상식 · 김동아 · 임미애

김민석 · 김승원 · 강경숙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1인가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생활· 주거 안정, 자립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 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3(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 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2.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 3.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 4. 1인가구에 대한 상담 · 건강관리
 - 5. 1인가구의 사회 관계망 형성 사업
 -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5(1인가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u>생활·주거 안정, 자립 및 사회</u>
	관계망 형성을 위한 시책을 적
	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4조의3(1인가구지원센터의 설
	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1인가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1인가구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의 개
	<u>발</u>
	2.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
	한 실태조사
	3.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4. 1인가구에 대한 상담・건강
	<u>관리</u>
	5. 1인가구의 사회 관계망 형성
	<u>사업</u>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 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을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⑤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 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